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27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영농조합법인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 11. 10. [redacted]시 B 임야 94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3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2014. 12. 5. [redacted]시 C 임야 1,00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4. 및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1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6. 5.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제되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면서 이를 부과 · 고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6. 7.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 8. 29. 및 2015. 1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뇌삼을 파종하여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특용작물(허브) 재배'를 이 사건 각 토지 사용 용도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2015.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제초, 개간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폐기된 철장 등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2016. 2. 1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다시 2016. 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원고 대표이사 및 원고가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부의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원고 측이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 5~6곳에서도 장뇌삼 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장뇌삼 종자를 구매하여 고용인부 D 등으로 하여금 2015. 8. 29. 및 2015. 11. 30. 두차례에 걸쳐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뇌삼 구매에 관한 간이영수증과 계약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처 분 목 록

단위: 원

과세대상 취득물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이 사건 1 토지	70,409,600	17,947,400	10,561,440	579,820	1,760,240	96,630
이 사건 2 토지	20,240,000	4,819,140	3,036,000	115,670	506,000	19,270
합계	113,416,140		14,292,930		2,382,1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